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성과와 과제

이재한(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시행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의 감소로 내수경기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하에서 수출의 성장 견인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아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기조로 한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다. 희망근로사업은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임금의 일부로 지급받게 되는 상품권의 유통을 통한 지역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상권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2009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희망근로사업은 기존의 복지지원 시스템에서는 지원받지 못하지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게 된 실직자, 휴·폐업자를 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대상에서 배제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재산 1.35억원 이하인 자가 우선 선발되도록 소득과 재산 기준을 설계하였고,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가 선발되도록 하였다. 또한 상품권이라는 새로운 재정정책수단을 도입하였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상권에서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에 대한 간접적 지원효과와 이를 통한 경기부양효과를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대규모 인력과 예산 투입으로 지방의 숙원사업 추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동 사업에는 국비 13,280억원, 지방비 3,790억원 등 총 1조 7천억원이 투입되어 9월 현재 약 25.6만여명이 전국 2만9천여개 사업장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표 1> 희망근로사업 인원선발 현황 (2009. 9. 8. 현재)

목표인원	신청인원	참여인원	사업장수
250,000명	388,515명	256,114명	28,956개

자료: 행정안전부(2009.9)

대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간의 숙원사업들을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거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취약지역의 소규모 다목적 활용 공간인 「동네마당 조성사업(전국 47개 시·군)」, 저소득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Happy Home 만들기 사업(전국 41개 시·군)」, 지역의 방치된 「공터를 소공원으로 만드는 사업」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자전거를 무료로 수리해주는 '자전거 무료 수리 센터 운영(대구 서구)', 장애인 편의시설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살피미 사업(인천

부평구)', 지역 경로당을 방문하여 봉사하는 '어르신 보듬이 사업(광주 광산구)', 대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대학생 전공 커리어 개발 사업(제주)' 등 다양한 내용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상품권 사용 애로 및 기존 취로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문제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2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시행 초기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첫째, 동 사업이 목표로 하는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의 흡수가 아닌 노인인구 및 농촌인력이 희망근로로 유입된다는 것, 둘째,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상품권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셋째, 기존 취로사업과 차별화되는 생산적 사업의 발굴이 미진하다는 것 등으로 크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시행 이전부터 마련하고 있었던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한 '농촌일손돕기 기동단' 운영에 대하여 지자체에 재강조하고, 사업일정도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일정부분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고령자 참여 문제는 2009년 3월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서 연령에 의한 제한을 둘 수 없게 됨에 따라 희망근로 자격에서 나이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사업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서는 나이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고령자가 참여하기에 적합한 일자리를 계획하고 배치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근로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권 제도는 초기 상품권 사용가능 점포에서의 인식과 홍보 부족이 가장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는데, TV광고와 전단지 배포 등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노력으로 가맹점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상품권의 지급비율(최저 30%)과 유통기한(지급일로부터 3개월)은 상품권의 빠른 유통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저소득층의 월 지출현황을 분석한 바로도 충분히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2009년 8월 20일 현재 6·7월 임금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69.3%(1,264억원 발행, 876억원 회수)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 유통도 순조로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른바 '단순 취로사업'으로 보여지는 단순일감 추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짧은 기간내에 대규모의 일자리를 발굴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지자체에서 착수가 쉬운 사업부터 추진했기 때문이다. 취로사업 성격으로부터 생산적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재료비 비율을 대폭 인상(25%⇒40%)하는 조치 등을 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사업 사례들을 발굴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적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용지표 안정과 시장경기동향지수 상승 견인

이번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성과는 우선 고용지표의 안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7월 발표된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났다. 8월에 발표된 7월 취업자수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공공행정부문 취업자수가 31만 9천명으로 나타나 희망근로가 고용상황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시장경기동향지수에서는 상품권 유통을 통한 경기회복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7월 지수는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희망근로상품권의 대량 유통을 그 주요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2> M-BSI(시장경기동향지수) 체감 및 전망추이

구분	08.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체감	67.5	68.7	60.1	44.7	50.9	54.4	70.2	55.6	62.8	47.1	49.4	44.7	54.8	61.9	57.8	55.5	65.6	-
전망	115.1	101.6	90.5	66.9	61.5	63.2	111.7	103.4	79.8	63.4	64.2	53.7	87.4	80.3	81.6	69.7	72.9	73.5

자료: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2009.08)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남은 과제

급격한 경기위축에 대응해 긴급대책으로 실시된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시행초기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가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간 큰 틀에서 사업을 안착시키는데 집중했다면 이제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다듬어 사업의 적실성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전국단위의 일관된 기준마련이 필요한 부분과 현장의 재량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투입된 재정이 정책대상자들에게 소득으로 이전되기까지의 흐름이 보다 면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사업종료 이후에도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고용서비스 연계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직자 휴·폐업자, 노령자, 여성가장 및 상인, 자치단체 등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희망하고 있음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